

합성 고분자 미립자(미세플라스틱) REACH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 지침서



법적 고지

이 지침서는 사용자가 「REACH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REACH 규정」의 조문만이 유일한 정본 법령 기준이며, 이 지침서에 수록된 정보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해당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 지침서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개정 번호	일자	개정 사항
1.0	2025. 11. 26.	초판
1.1	2026. 4. 17.	2026년 4월 국제통일화학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IUCLID) 서식 변경에 따른 제4.9절 개정

문서명: 합성 고분자 미립자(미세플라스틱) REACH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 지침서

참조 번호: ECHA-26-G-01-EN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978-92-9468-552-0

카탈로그 번호: ED-01-26-007-EN-N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10.2823/6001298

발행일: 2026년 4월

언어: 영어

© European Chemicals Agency, 2026

표지 ©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 문서에 관한 질의나 의견이 있는 경우, 참조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하여 정보 요청 서식을 통하여 제출한다.

정보 요청 서식은 다음 유럽화학물질청 문의(Contact ECH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ha.europa.eu/contact>

European Chemicals Agency(유럽화학물질청)

P.O. Box 400, FI-00121 Helsinki, Finland(사서함 400, FI-00121 헬싱키, 핀란드)

목차

목차	4
1. 서론	6
2. 개요	7
3. 유럽화학물질청 보고 정보의 제출 시기 및 책임 주체	8
4. 보고 대상 정보.....	10
4.1 용도	10
4.2 적용 제외.....	13
4.3 용도명	14
4.4 화학제품 분류(PC)	14
4.5 사용 분야(SU).....	14
4.6 기술적 기능(TF)	16
4.7 사업장	16
4.8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	16
4.9 환경으로의 추정 배출량	19
5. 공급자와의 소통 사유 및 시기	24
6. 보고 절차	25
6.1 IUCLID에서의 보고	25
6.2 제출	26
6.3 정보 공개.....	26
7. 요청에 따른 회원국 관할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28

표 목록

표 1. IUCLID 선택 목록에서 지정 가능한 용도	10
표 2.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 보고용 코드 목록	17
표 3. 배출량 추정을 위한 두 가지 선택지	20
표 4. 배출량 추정 도구 및 자료	24

1. 서론

2023년 9월 25일 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23/2055」에 따라 도입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REACH)에 관한 규정」 부속서 XVII 항목 78(통칭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정”, 이하 “제한 규정”¹이라 한다)은 적용 제외 대상인 합성 고분자 미립자(SPM)의 특정 용도에 대한 보고 요건을 규정한다.

이 문서의 목적은 제조자, 산업 하위사용자 및 합성 고분자 미립자 공급자가 유럽화학물질청에 대한 연례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고는 국제통일화학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IUCLID) 서식으로 수행하며, 해당 서류는 화학물질 전자 접수 시스템(REACH-IT)을 통하여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한다.

이 제한 규정에서 보고 요건의 목적은 사용 및 폐기 지침의 효과성 관찰에 기여하고 시장 출시² 금지에서 적용 제외된 용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실증적 근거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다. 보고된 정보의 최적 활용을 보장하고 규제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화학물질청은 해당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한다.

이 지침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용: 「REACH 규정」 제3조제24호에 규정된 바와 같다. 모든 가공, 배합, 소비, 보관, 보존, 처리, 용기 충전, 용기 간 이송, 혼합, 완제품 생산 또는 그 밖의 모든 이용을 말한다.

적용 제외: 「REACH 규정」에 따른 제한의 면제 또는 적용 제외를 말한다. 이 제한 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서 제4.2절에서 이를 상세히 다룬다. 적용 제외된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REACH 제한 설명 지침서」](#) 제1부 제6절 및 제2부를 참조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SPM): 이 문맥에서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구성하는 세부 정의는 이 제한 규정(「REACH 규정」 부속서 XVII 항목 78)의 제1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제품(물질, 혼합물, 또는 물질이나 혼합물과 완제품의 조합)이 이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REACH 제한 설명 지침서」](#) 제1부 제2절을 참조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 공급자: 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의 용도로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산업 하위사용자를 말한다. 유통업자는 이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없음에 유의한다. 유럽화학물질청 웹사이트의 [「시작하기\(Getting started - ECHA\)」](#) 메뉴에서 「REACH 규정」에 따른 주체별 역할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¹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055/oj>

² 「REACH 규정」 제3조제12호에서는 “시장 출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은 시장 출시로 본다.”

2. 개요

이 제한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고 요건은 시장 출시 금지에서 적용 제외된 특정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으로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추정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다. 해당 정보는 보고 요건의 적용 대상인 각 법인(LE)(또는 해당 법인을 대리하는 자)이 제출하여야 한다. 추정 배출량은 해당 적용 제외 조항을 표시하여 용도별로(제4.1절 참조)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용도에 어느 적용 제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산업 현장에서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사용하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조자 및 산업 하위사용자³**는 제4항 a호에 따른 적용 제외를 적용받으며, 제11항에 따라 운송 중 배출을 포함하여 자체 제조 또는 사용에서 발생하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추정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들은 배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추정 배출량을 보고한다.
- 제4항 b호·d호 또는 e호, 또는 제5항 a호·b호 또는 c호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인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의 공급자***로서 해당 제품을 **전문가 용도 및 일반 대중 용도로**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자는 제12항에 따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하여 해당 제품이 폐기물로 처리될 때까지 발생하는 하위 사용 단계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추정 배출량(예: 소매업자를 포함한 유통업자 및 최종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하위 단계의 추정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공급자는 해당하는 경우 제11항에 따라 자체 추정 배출량도 보고하여야 한다(제3절 참조).

* 참고: 이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목적상, 공급자는 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의 용도로 해당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산업 하위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없다. 배합자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조자 및 산업 현장에서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사용하는 산업 하위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최초 시장 출시’

전문가 용도 또는 소비자 용도로 유럽경제지역(EEA) 및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을 최초로 판매하거나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 의무는 제조자, 하위사용자 또는 수입자에게 적용된다.

³ 용도 기술에 관한 해설은 [유럽화학물질청의 「정보 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지침」 제R.12장\(용도 기술\)](#)을 참조한다.

3. 유럽화학물질청 보고 정보의 제출 시기 및 책임 주체

이 제한 규정은 공급망 내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보고 요건을 규정한다. 보고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 역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예: 2025년의 환경 배출량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는 용도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시작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단독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를 단순히 보관하여 시장에 출시하기만 하는 유통업자는 이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없음에 유의한다. 유통업자의 경우, 보고 의무는 공급자, 즉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장에 공급하는 제조자, 하위사용자 또는 수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보관 활동 외에도 유럽경제지역(EEA) 외의 지역으로부터 해당 물질·혼합물을 조달하거나 재배합, 재포장 또는 재표시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망 내 역할 식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유럽화학물질청 웹사이트(<https://echa.europa.eu/support/getting-start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체: 산업 현장에서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펠릿, 플레이크 및 분말 형태)의 제조자 및 산업 하위사용자

보고 내용 및 시기: 2026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이 지침서 제4절에 기술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여 직전 역년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체: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제조하는 그 밖의 제조자, 및 산업 현장에서 이를 사용하는 그 밖의 산업 하위사용자

보고 내용 및 시기: 2027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이 지침서 제4절에 기술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여 직전 역년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자, 산업 하위사용자 또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의 공급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주체: 전문가 용도 및 일반 대중 용도로 최초로 시장에 출시되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이 제한 규정 제4항 b호·d호·e호 및 제5항에 규정된 제품)의 공급자

보고 내용 및 시기: 2027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이 지침서 제4절에 기술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여 직전 역년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의 적용 제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산업 하위사용자는 전문가 및 소비자에게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공급자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보고 요건이 모두 적용된다.

법인(LE)의 정의

법인은 복잡한 사업 구조부터 단순한 조직 형태의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단법인·회사 또는 개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의 개념 및 사업자 계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사업자를 위한 유럽화학물질청 계정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은 단 1건의 서류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류 내에서 자체 사용(해당 제한 규정 제11항)에 따른 합성 고분자 미립자 배출량과, 해당 제품을 전문가 및 소비자에게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제4항 b호·d호 또는 e호, 또는 제5항에 따름) 해당 합성 고분자 미립자가 시장에 출시된 최종 용도별(이 제한 규정 제12항에 따름) 배출량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4.2절(적용 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배출량은 보고 요건의 적용 대상인 각 법인(또는 해당 법인을 대리하는 자)이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보고 대상 정보

이 절에서는 연례 보고 요건의 일환으로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개별 정보 항목을 설명한다. 정보는 법인별, 용도별 및 보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IUCLID 제2절 표에 필요한 만큼 행을 생성하여 하나의 서류에서 여러 용도를 보고할 수 있다. 이는 제6절에 기술되어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보고서 작성 방법 IUCLID 매뉴얼](#)」에 더욱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1 용도

합성 고분자 미립자 또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함유한 제품의 제조자, 산업 하위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용도별로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추정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배출량 보고를 위한 최소 세분화 수준이다.

표 1. IUCLID 선택 목록에서 지정 가능한 용도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 목록에서 해당 용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펠릿, 플레이크 및 분말의 제조 또는 사용	
산업 현장에서 그 밖의 제조 또는 사용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식품첨가물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체외진단기기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그 밖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고분자를 제조하는 기업은 제조된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형태 및 해당 미립자가 플라스틱 제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용도를 목록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용도로 보고할 수 있다. 플라스틱 제조를 의도하는 용도로 하는 펠릿, 플레이크 또는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용도는 선택 목록의 첫 번째 용도(위의 표 1의 첫 번째 선택지)에 해당한다.

표 1의 두 번째 선택지에 있는 '그 밖의 제조'는 플라스틱 제조용 펠릿, 플레이크 및 분말 형태가 아닌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첨가제로 사용하기 위한 폴리프로필렌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하나의 법인은 여러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즉, 산업 현장의 제조자 또는 산업 하위사용자는 예를 들어 의약품 및 체외진단기기의 소비자/전문가 용도를 위한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의 공급자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용도별로 별도의 행을 추가하고 IUCLID 서식 제2절 표에 필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들 3개 용도(표 1의 제1행, 제3행 및 제5행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용도에 대한 보고는 법인당 단 1건의 서류로 제출한다. 수탁 제조자는 자체 합성 고분자 미립자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은 용도를 추가로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세분화 수준으로 배출량 정보를 보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서로 구별되는 용도가 수행되고 상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이 이러한 용도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별도의 추정 배출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1] 단일 용도 보고

가정용 검사를 위한 유전물질 채취 키트 형태로 소비자에게 체외진단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생물학적 검체 검사를 위해 비산업 실험실의 전문가에게 체외진단기기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두 제품 모두 중량 기준 5~10%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SPM)에 해당하는 고분자를 함유하고 있으나, 두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함유된 고분자는 서로 다르다.

해당 용도는 '*체외진단기기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에 해당하며, IUCLID 내 단일 레코드 양식에서 해당 용도 전체에 대한 보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보고는 소비자 및 전문가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정 제품을 유럽경제지역(EEA) 내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경우에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는 공급망 내에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수반되는 경우 등에서 이중 보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및 전문가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공급망 내 첫 번째 주체에게만 보고 의무가 있다.

표 1에 정의된 용도는 보고 목적상 최소 세분화 수준을 제공한다. 각 용도는 IUCLID 제2절 표에서 별도의 행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단일 용도에 대하여 복수의 용도 기술자(제4.4절부터 제4.6절까지 참조)를 선택할 수 있다.

[예시 2] 둘 이상의 용도 보고

전문가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과 체외진단기기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해당 제품들은 0.01중량%를 초과하는 다양한 양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함유한다.

이 경우 해당 용도는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와 '*체외진단기기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모두에 해당한다.

IUCLID 제2절 보고 요건 표에서 2개의 개별 행을 사용하여 단일 IUCLID 서류에 이들 2개 용도에 대한 보고

합성 고분자 미립자(미세플라스틱) REACH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 지침서	12
---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 행에 모든 관련 제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적용 제외

해당 제한 규정은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시장에 출시 금지에서 적용 제외되는 특정 용도에 대해 보고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적용 제외되는 용도는 제한 규정 조문 우측 열의 제4항 및 제5항과 다음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은 IUCLID 서식의 선택 목록에서 해당하는 적용 제외 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산업적 용도(제조사 및/또는 산업 하위사용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적용 제외 항목은 단 1개뿐이다.

- 제4항

제4항 a호(4a)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합성 고분자 미립자(단독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

전문가 및/또는 소비자 용도로 제품을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공급자가 보고하는 최종 용도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적용 제외 범주가 2가지이다.

- 제4항(특정 제품 범주에 대한 적용 제외)⁴

제4항 b호(4b)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

제4항 d호(4d) 식품첨가물

제4항 e호(4e) 체외진단기기

- 제5항(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중 위해성⁵ 최소화에 따른 적용 제외)

제5항 a호(5a) 기술적 수단에 의해 밀폐된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5항 b호(5b) 물리적 특성이 영구적으로 변형된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5항 c호(5c) 고체 바탕질에 영구적으로 통합된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해당 용도에 여러 적용 제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예: 제4항 e호(4e) 및 제5항 a호(5a)]에는 모든 관련 적용 제외를 선택하여야 한다.

⁴ 이 제한 규정 제4항 b호·d호 및 e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⁵ 이 제한 규정 제5항 a호·b호 및 c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4.3 용도명

법인은 용도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영어 자유 서술형 서식으로 작성된다. 용도명은 특정 용도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수 있는 약어는 피하여야 한다.

유럽화학물질청의 「[정보 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지침](#)」 제R.12장(용도 기술)⁶ 제R.12.4.2.2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용도명은 해당 용도에서 다루는 활동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의 다른 용도와 구별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해당 부문 수준에서 합의된 용도명을 포함하는 용도 맵을 개발하였다. 유럽화학물질청의 용도 맵 라이브러리는 용도명에 관한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https://echa.europa.eu/csr-es-roadmap/use-maps/use-maps-library>.

4.4 화학제품 분류(PC)

법인은 다음과 같이 사전 정의된 용도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해당 화학제품 분류 또는 복수의 화학제품 분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산업 현장에서 그 밖의 제조 또는 사용'
- '그 밖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화학제품 분류는 산업 하위사용자, 전문가 및 소비자의 최종 용도에 적용된다. 제조 용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 식품첨가물 또는 체외진단기기에서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부문별 특정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이미 명확히 확인되므로 화학제품 분류를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의 경우 IUCLID 서식에서 해당 화학제품 분류 항목을 선택할 수 없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조 용도를 보고하는 경우 선택 목록에서 '그 밖의 것 - PC 0'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표시되는 텍스트 필드에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선택 목록의 항목은 유럽화학물질청의 「[정보 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지침](#)」 제R.12장 (용도 기술)에 기술된 화학제품 분류를 반영한다. 전체 목록은 이 지침서의 PDF 문서를 참조한다.

4.5 사용 분야(SU)

법인은 적절한 사용 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 용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산업 현장에서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펠릿, 플레이크 및 분말의 제조 또는 사용'
- '산업 현장에서 그 밖의 제조 또는 사용'

⁶ 용도명에 관한 추가 정보 및 예시는 지침서 부록 R.12.1 '용어의 명확화'를 참조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미세플라스틱) REACH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 지침서	15
---	----

그 밖의 용도의 경우 사용 분야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IUCLID 서식에서 선택할 수 없다.

선택 목록의 항목은 유럽화학물질청의 [「정보 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지침」 제R.12장 \(용도 기술\)](#)에 기술된 사용 분야를 반영한다. 전체 목록은 이 지침서의 PDF 문서를 참조한다.

4.6 기술적 기능(TF)

법인은 합성 고분자 미립자가 제품 내에서 수행하는 적절한 기술적 기능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 용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산업 현장에서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펠릿, 플레이크 및 분말의 제조 또는 사용'
- '산업 현장에서 그 밖의 제조 또는 사용'
-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 '식품첨가물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 '체외진단기기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 '그 밖의 소비자 및/또는 전문가 용도'

기술적 기능은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조에 따른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선택 목록에서 '특정 기술적 기능 없음' 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 위의 목록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는 제조 또는 사용이 포함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조의 경우에는 '특정 기술적 기능 없음'을 선택하여야 하나, 합성 고분자 미립자 사용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술적 기능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 목록의 항목은 유럽화학물질청의 [「정보 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지침」 제R.12장\(용도 기술\)](#)에 기술된 기술적 기능을 반영한다. PDF 형식의 전체 목록 및 해당 설명은 이 지침서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4.7 사업장

산업 현장에서의 제조 및/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이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의 사업장을 식별하여야 한다. 특정 법인에 따라 해당 사용이 수행되는 모든 관련 사업장은 법인 사업장을 생성하고 이를 IUCLID 제2절 표의 '사업장' 열에서 선택하여 연계하여야 한다. IUCLID 내 법인 사업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UCLID 6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한다.

4.8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

이 제한 규정에는 해당하는 용도별로 보고되는 정보에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된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IUCLID 서식에는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에 관한 선택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당 목록은 [통일상품명명 및](#)

부호체계(HS)⁷에서 사전 선별된 품목 항목(코드 및 설명) 목록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목록에는 4자리 코드와 고분자 명칭의 조합이 포함된다. 보고 대상 고분자를 기술하는 항목을 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코드 9999 '그 밖의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의 유럽연합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자유 텍스트 필드에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에 관한 대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 고분자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나 해당 제품의 표시,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표 2에는 IUCLID 서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분자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표 2.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 보고용 코드 목록

HS 코드	설명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⁷ [통일상품명명 및 부호체계 | 세계관세기구\(WCO\) 무역 도구](#)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숄파이드·폴리숄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것 (다른 표제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고분자) +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 *다른 표제에서 다루지 않는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와 관련하여 제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텍스트 필드이다.

참고: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 보고 목적상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일차제품, 판, 시트,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라는 표현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울러 일부 HS 코드 설명에는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예: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천연
고분자)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러한 물질은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목적상
고려하지 아니한다.

4.9 환경으로의 추정 배출량

법인은 보고 연도의 전체 역년 동안 보고된 용도에서 발생하는 환경으로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추정 배출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출 기한이 2029년 5월 31일인 2028년 보고를 완료할 때는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배출량의 추정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추정치는 운송 중 배출량을 포함하여 사용 중에 발생하는 배출량부터 폐기되거나 유럽경제지역(EEA)에서 반출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매체(대기, 수계 및 토양 등)를 고려한 총합 수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해당 추정치에는 모든 저감 조치를 거친 후의 특정 용도 내 의도적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조업 손실량, 사고나 유출과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손실량뿐만 아니라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 단계는 해당 사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량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법인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용도 유형의 추정 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표 3. 배출량 추정을 위한 두 가지 선택지

선택지	설명	세부 사항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입자의 양	연간 톤 또는 킬로그램 단위의 <u>입자 총량</u>으로 추정치를 보고한다(합성 고분자 미립자 및 비합성 고분자 미립자 성분을 포함한다). 입자 내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농도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도 범위 선택지: -0.1~10% -10~30% -30~50% -50~70% - 70~90% - 90~100% 참고: 농도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한 추정치(90~100%)를 선택하여야 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 단독 수량	첨가제, 충전제 및 그 밖의 비합성 고분자 미립자 성분을 제외한 연간 톤 또는 킬로그램 단위의 <u>합성 고분자 미립자 총량</u>으로 추정치를 보고한다.

참고: 선택지 A와 선택지 B는 모두 배출량 보고를 위해 보고 서식 내 IUCLID 제2절 표에서 동일한 열을 사용한다. 두 가지 선택지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농도 범위(선택지 A) 또는 선택지 B'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구분된다. 정량적으로 합성 고분자 미립자 농도 100%로 선택지 A에 따라 보고하는 것(즉,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함유한 입자의 총량을 보고하는 것)은 선택지 B에 따라 보고하는 것(즉,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양)과 동등하다. 다만, 두 보고 선택지는 정보 공개 목적상 별도로 집계된다(제6.3절 참조). 자세한 사항은 「[미세플라스틱 보고서 작성 방법 IUCLID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의 공급자는 자체 배출량 외에도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시점부터 최종 용도로 사용된 후 폐기될 때까지의 하위사용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 단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폐기 과정 중의 배출량은 해당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시점까지만 추정하여야 한다. 즉, 회수되어 폐기물로 처리된 유출물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추정 대상은 생산 공정에 재투입되지 않거나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은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유출량이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미세플라스틱) REACH 제한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 지침서	21
---	----

[예시 3] 배출량 보고

마스터배치 제조자가 첨가제 및 고분자 함량이 매우 다양한 펠릿을 제조하여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배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추정 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한 가장 실무적인 선택지는 선택지 A에 따라 해당 사용에서 기인하는 펠릿 손실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펠릿 제조 용도의 보고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배합물이 사용될 수 있는 펠릿의 산업적 사용 등과 같은 후속 용도의 보고에도 선택할 수 있다. 고분자 함량의 다양성이 보고 대상 농도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공되는 선택지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펠릿에 대해 기본값으로 100%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농도를 가정하여야 하며, 보고 서식에서 90~100%(선택지 A)를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은 보고 연도의 추정 배출량이 1톤(즉,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수량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추정 배출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톤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추정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위한 하한선은 없다.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적거나 배출량이 매우 낮거나 영(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고 요건 적용 대상인 용도의 추정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위해성이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합성 고분자 미립자 또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함유한 입자가 현탁액 상태로 사용되거나 액체에 분산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체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건조 중량(킬로그램 또는 톤 단위, 선택지 B) 또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입자의 건조 중량(킬로그램 또는 톤 단위, 선택지 A)만을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 용도 배출량

[예시 4] 의약품의 최종 용도 배출량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함유한 의약품을 전문가 및/또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공급자는 해당 제품의 최종 용도가 완료될 때까지의 배출량 추정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의약품의 최종 용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섭취 및 배설이 포함된다. 이는 소화 과정 중 합성 고분자 미립자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최종 용도 단계에서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운송 중 배출량

제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되는 배출량에는 운송 중 환경으로 방출된 합성 고분자 미립자의 추정 수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정 운송 배출량은 관련 사전 정의된 용도 항목 아래에서 사용 및 최종 용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함께 하나의 통합 추정치로 보고한다.

운송 배출량 보고 의무가 있는 주체는 기업 간 계약상 합의에 명시된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시 5] 운송 배출량

운송 중 배출량에는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방출량뿐만 아니라, 돌발 사고 및 우발적 누출에 따른 배출량 추정치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추정치를 산정할 때 보고자는 자체 회사 내에서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업 부문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의 빈도, 성격 및 규모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배출량 추정치를 포함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 운송 중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을 규정한 계약상 합의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운송 회사는 「REACH 규정」에 따른 의무 주체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보고 의무가 없다. 보고 책임은 오로지 관련 법인(제조사, 수입자, 하위사용자 또는 공급자에 해당할 수 있다)에 귀속된다.

자세한 지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REACH 제한 설명 지침서」](#) 제1부 제9절 및 제2부 제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1 배출량 추정 도구

보고 시 환경으로의 실제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용에 대한 배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정 배출량 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경험이나 측정 자료에 기반할 수 있는 제조 또는 펠릿 손실량 정보뿐만 아니라 운송 배출량 추정치를 포함하는 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배출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한 정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근거하여 추정 배출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목적으로 특정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출처를 제공한다. 이러한 도구는 추정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매체에 대한 기본 방출 계수(분수 또는 백분율로 표시됨)를 제공할 수 있다.

표 4. 배출량 추정 도구 및 자료

도구 명칭	적용 범위	출처
OECD 배출 시나리오 문서	특정 용도 및 부문에 대한 배출원, 사용 패턴, 잠재적 방출 경로 및 방출 계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eries-on-emission-scenario-documents_23114606.html
환경 방출 분류(ERC)	다양한 환경 방출 분류(ERC)에 대한 백분율(%) 단위의 기본 최악 조건 방출 계수	유럽화학물질청 「환경 노출 평가 지침」 제R.16장: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17224/information_requirements_r16_en.pdf/
부문별 환경 방출 분류(SPERC)	부문별 특정 환경 방출 분류	참여 부문 협회 및 유럽화학물질청의 용도 맵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확인 가능: https://echa.europa.eu/csr-es-roadmap/use-maps/use-maps-library

5. 공급자와의 소통 사유 및 시기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합성 고분자 미립자(단독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의 공급자는 산업 하위사용자가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정보는 산업용 물질 또는 혼합물로 공급되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요구되는 경우)나,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함유한 그 밖의 제품의 표시,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 및 폐기 지침, 수량 또는 농도에 관한 정보,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에 포함된 고분자의 일반 식별 정보가 필요하므로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주체별 역할 및 공급망 소통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성 고분자 미립자 REACH 제한 설명 지침서](#)」를 참조한다.

6. 보고 절차

6.1 IUCLID에서의 보고

보고는 IUCLID 서식으로 수행한다. 미세플라스틱 REACH 제한 규정에 따른 자료 보고용 IUCLID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입력된 데이터셋**이 제공된다. 사전 입력된 데이터셋은 IUCLID 웹사이트

(<https://iuclid6.echa.europa.eu/bg/get-iuclid-da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입력된 데이터셋의 사용 및 각 IUCLID 절 작성에 관한 단계별 지침은 「*미세플라스틱 보고서 작성 방법 IUCLID 매뉴얼*」을 참조한다.

IUCLID에서 데이터셋을 생성한 후, 제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 콘텍스트인 **‘REACH 미세플라스틱 보고’**

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물질 및 보고자’ 절 아래의 좌측 열에서 기준 물질은 **‘합성 고분자 미립자’(EC 번호: 750-000-6)**이어야 한다. 이는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에 부여된 총칭명이므로 해당 기준 물질에 대해 다른 식별자는 필요하지 않다. 가져온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 제1절은 사전 입력되어 있다.

다음 절인 ‘2 보고 요구사항’에서는 IUCLID 화면 좌측 탐색 트리에서 보고 연도별로 레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를 선택하면 보고를 완료하기 위해 작성하여야 하는 정보 필드가 표시된 표가 나타난다. 보고 대상 정보의 구성 요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지침서 제4절을 참조하며, 사전 정의된 용도별로 표의 행을 작성한다(제4.1절 참조). 제2절 표의 **‘사업장’** 필드는 제조자 및 산업 하위사용자에게만 적용됨에 유의한다. 적용 가능한 모든 사업장은 보고된 용도와 연계하여야 한다.

제2절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한 후 우측 상단의 **‘서류 생성’**을 클릭하여 서류를 생성하여야 한다. **‘서류 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 열리는 페이지는 **‘서류 헤더’**이다. 서류 헤더에는 표준 제출 메타데이터, 제출 법인 및 이전에 제출한 서류를 갱신하기 위해 작성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서류 갱신 기능은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은 2026년 2분기에 제공될 예정이다. 서류는 매년 갱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발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후의 연례 보고 시에는 이전 연도의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 생성된 데이터셋에는 직전 역년의 서류에 보고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역년의 보고를 위한 신규 서류를 생성할 수 있다. 임의의 데이터셋 또는 서류에서 레코드를 복제하고 새로운 보고 연도에 맞게 정보를 수정하기 위하여 IUCLID의 **‘다음으로부터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선택적 첨부파일은 서류 제3절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제출 시에는 요구되지 아니하나, 회원국 관할 당국의 추가 정보 요청 등에 따른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단일 IUCLID 서류에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사전 정의된 용도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법인이 복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IUCLID 및 그 사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UCLID 6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한다. 미세플라스틱 보고 서류

작성에 관한 단계별 지침은 「*미세플라스틱 보고서 작성 방법 IUCLID 매뉴얼*」을 참조한다.

6.2 제출

서류는 REACH-IT를 사용하여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려면 법인은 보고 의무가 있는 해당 법인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REACH-IT에 가입하고, 제공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유럽화학물질청 웹사이트 (<http://www.echa.europa.eu/>)에서 REACH-IT에 접속하거나 REACH-IT 웹사이트(<https://reach-it.echa.europa.eu/>)로 직접 접속할 수 있다.

IUCLID 서류가 준비되면 REACH-IT에 로그인하여 메뉴에서 '*미세플라스틱 보고서*'를 선택하고 해당 IUCLID 서류를 업로드한다. 내장된 마법사가 보고서 제출을 안내한다. 제출 후에는 REACH-IT에서 그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법인은 자체 IUCLID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REACH-IT에서는 타사 사용자 기능을 통해 특정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용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모회사에 의한 일괄 제출이나 컨설턴트 또는 협회가 의무 주체를 대리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사 사용자 기능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유럽화학물질청 계정 포털](#)' 및 [질의응답 9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법인은 자신을 대리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추정 배출량은 법인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단일 법인이 여러 법인 그룹의 총배출량을 통합하여 보고할 수 없다.

6.3 정보 공개

이 지침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합성 고분자 미립자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제한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REACH 규정」 상의 회원국 관할 당국(MSCA)에 제공된다. 아울러 합성 고분자 미립자 배출량 보고에 따른 통합 정보는 유럽화학물질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정보 공개를 위한 서식은 현재 개발 중이며, 2026년 5월에 최초 보고 절차가 완료된 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영업비밀 보호

다음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유럽화학물질청 및 회원국 관할 당국(MSCA)만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 및 사업장 정보
- 제한 규정 제14항에 따라 회원국 관할 당국의 요청으로 제공된 정보

개별 법인이 보고한 모든 자료는 영업비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된 형태로 공개된다. 회원국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첨부파일은 일절 공개되지 아니한다.

7. 요청에 따른 회원국 관할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고분자의 식별 정보 및 고분자의 기능에 관한 추가적인 특정 정보는 회원국 관할 당국이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수행된다.

관할 당국이 요청하는 추가 정보

제한 규정 제14항에서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 함유 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및 산업 하위사용자가 회원국 관할 당국(MSCA)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고분자의 식별 정보[최소한 「REACH 규정」 부속서 VI 제2.1호부터 제2.2.3호까지 및 제2.3.5호부터 제2.3.7호까지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다] 및 해당 고분자의 기능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청된 정보는 IUCLID 서류를 갱신하고 서류 제3절에 해당 정보를 첨부파일로 추가함으로써 관할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제공 기한은 제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관할 당국이 요청한 정보는 비밀로 보호되며, 앞 절에서 기술한 통합 보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UROPEAN CHEMICALS AGENCY(유럽화학물질청)

P.O. BOX 400, FI-00121 HELSINKI, FINLAND(사서함 400, FI-00121 헬싱키, 핀란드)

ECHA.EUROPA.EU